

#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4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8.

제출자 : 하남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내실화
- 나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(안 제5조)
- 나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 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심의위원회 독립 운영 및 심의 기능 강화(안 제7조)
- 다.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적정한 운영 도모(안 제7조의2, 제7조의3)
- 라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2029. 12. 31.로 연장(안 제12조)

### 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#### 4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##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#### 6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##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4. 6. 25.~2024. 7. 15.(20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##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의견 없음

#### 9. 참고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(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영 합리성 제고)

#### 10. 관련부서: 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

##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설치하여” 를 “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담당관 또는 과장” 을 “부서장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③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 및 회계별 국장·단장·소장·원장

2.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

3.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심의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7조의3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

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④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 을 “2029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기획조정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조정과장 최 현 주
	팀장 직위·성명	예산팀장 방 현 희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정 채 빈 (031-5182-1570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통합기금은 하남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<u>설치하여</u> 예치·관리하고,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: 통합기금 업무 담당 <u>담당관 또는 과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③ <u>제1항의 심의위원회 기능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</u></p>	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 ----- <u>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부서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③ <u>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</u></p>

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<신 설>

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이자액 등)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

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 및 회계별 국장·단장·소장·원장
2.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
3.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<신 설>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심의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7조의3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

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④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

2.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
3.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존속 기한)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2조(존속 기한) -----  
-- 2029년 12월 31일-----.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약칭 : 지방기금법)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####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####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 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 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 **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**

## **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**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7조의 3(심의위원회의 운영)
-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(수당 등의 지급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

## **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1호

## **3. 미첨부 사유**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**4. 작성자: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장(최현주)**

# 참고사항(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)

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

국민권익위원회

## 국민권익위원회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제도개선 권고(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영 합리성 제고)
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'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영 합리성 제고' 방안을 제도개선 권고(붙임1)하오니,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관리를 하고 있으며,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'제도개선 추진계획서(붙임2)' 및 '단위과제별 이행실적(붙임3)' 양식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,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제도개선 추진계획서(붙임2): '23.11.25.까지 제출
  - ※ 단위과제별 이행실적(붙임3)
    - ? 행정안전부: '24.7.31.까지 제출(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)
    - ? 지방자치단체: 제출기간 구분
      - ① 공금예금계좌 개설: '24.1.31.까지 제출(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)
      - ② ① 이외의 모든 과제: '24.7.31.까지 제출(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)

- 붙임: 1. 제도개선 의결서 1부  
2. 제도개선 추진계획서(양식) 1부  
3. 단위과제별 이행실적(양식) 1부. 끝.

국민권익위원회

수신자 행정안전부,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



행정사무관	김영욱	사회제도개선 과장	박해경	권익개선정책 국장	권근상	전결 2023. 10. 25.
협조자						
시행	사회제도개선과-4167	(2023. 10. 25.)		접수	법무감사관-10982	(2023. 10. 25.)
우	30102	세종특별자치시	도움5로 20, ( 국민권익위원회)			/ www.acrc.go.kr
전화번호	044-200-7257	팩스번호	044-200-7923		/ ugiok@korea.kr	/ 대국민 공개
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. 내 삶이 달라집니다.